

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-41호

항만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25조의2에 의거하여 항만시설물의 내설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「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03월 25일  
해양수산부장관

###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개정

항만법 제29조의2 동법 시행령 25조의2에 의거하여 항만시설물의 내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「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1. 건 명 :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

2. 구 분 : 개정

3. 목 적

- 「시설물안전법」 전부개정(2018.1)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기조\*와 항만시설물의 특성과 관리여건 변화에 따라 지침 개정 필요

\*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, 유지관리계획 제출, 정기안전점검 과업내용 등

4. 주요 내용

- (실명제) 점검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

\* (당초) 안전점검 실시 후 점검내용 및 결과만 작성·제출

(개정) 안전점검에 참여한 점검자의 실명을 결과와 함께 기재하여 제출

- (관리제도)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제출근거 마련

\* (당초)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만 명시

(변경)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명시

○ (과업내용) 정기안전점검 과업에서 실시할 사항 명시

- \* (당초) 정밀/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만 명시하고,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누락 (변경) 기존 과업내용에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추가 반영하여 명시

5. 관련단체 : 한국항만협회

(☎ 02-2165-0138, <http://www.koreaports.or.kr>)

- ※ 「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(☎ 044-200-5955, 5956) 또는 한국항만협회(☎ 02-2165-013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([www.mof.go.kr](http://www.mof.go.kr))와 한국항만협회([www.koreaports.or.kr](http://www.koreaports.or.kr))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(안)

## 1. 개정이유

본 규정의 근거 법령인 「항만법」이 일부 개정되고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특성과 운영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, 책임기술자 자격사항 및 안전점검 실명제 등 항만 시설물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수행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관련법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 수정

- 안전점검 실시에 있어서 관련법인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

나.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제도 강화 (안 제4조, 제8조)

- 소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명시하였으며, 안전점검 관리 강화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안전점검·사후 실명제를 추가

다. 정밀안전점검 시 내진확보 여부 확인 사항 수정 (안 제14조)

- 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에 있어서 시설물의 내진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성능평가, 내진보강 여부의 확인사항을 추가

라. 시설물 보수·보강 시 우선순위 결정 사항 신설 (안 제32조)

-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·보강 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

도록 검토사항 추가

마.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신설 (별표 6)

-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을 신설하여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

바.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포함내용 명시 (별표 11)

-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점검보고서의 신뢰성 확보 및 시설물의 안전강화 기초의 반영

#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「항만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, 「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」 등
- 예산상 조치 : 해당 없음
- 합의 : 생략
- 기타 : 신·구 조문 대비표

##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일부개정(안)

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2항 중 “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1·2종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해”를 “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1·2·3종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해 본 지침”로 한다.

제3조 3호 중 “관계법령”을 “관계법령, 관리계약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 4호 중 “개량·보수·보강”을 “개량·보수·보강·개축”으로 한다.

제3조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“외관조사망도”란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를 평면상에 결함, 손상, 균열 등의 위치 및 내용을 표기한 것을 말한다.

제4조 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조 중 “명시된 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.”를 “다른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제출하여야 한다.”를 “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8조 3항, 4항, 5항을 각각 4항, 5항, 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3항 및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안전점검에 참여한 책임기술자 등은 점검결과에 실명을 기재하고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주체의 책임기술자는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고 실명을 기재하여 각각 보관한다.
- ⑥ ~(현행과 같음). 다만, 「국가표준기본법」 및 「계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검·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.

제11조 2항 중 “소유자”를 “관리주체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별표 2에”를 “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령 별표 5에”로 한다.

제14조 3항 중 “정밀점검에서는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”를 “정밀안전점검에서는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, 내진보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”로 하며, 같은 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,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5조 중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,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7조 3항 중 “구조물의 형상”을 “시설물의 상태”로 한다.

제18조 2항 중 “사용할 수 있다.”를 “사용할 수 있으며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19조 1항 및 2항을 각각 2항 및 3항으로 하고 2항 중 “사람은”을 “책임기술자 등은”으로 하고 “착용하여야 한다.”를 “착용하여야 하며, 점검장비 등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.”로 하며 3항 중 “밀폐된 공간”을 “수중조사 및 밀폐된 공간”으로 한다. 1항 및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책임기술자는 안전을 위하여 점검 작업 및 점검 장비 운영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수중조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세부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.

제26조 3항 중 “평가에 사용된”을 “안전성평가에 사용된”으로 하고 “해석 결과”를 “해석결과, 입력자료”로 한다.

제28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9조 2항 중 “구조물의 중요도”를 “시설물의 중요도”로 한다.

제32조 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·보강 우선순위를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.

1. 보수보다는 보강을, 보조부재보다는 주 부재를 우선하여 실시
2.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,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
3. 발생위치 및 시기(추정), 발생규모, 진행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시

③ 관리주체는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, 대상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재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.

제33조 중 “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”을 “과업내용을 중심으로 별표11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”으로 한다.

제35조 중 “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”을 “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”로 하고 “12월 31일”을 “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2에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 중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준비사항(제8조제4항 관련)

1.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: 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발주할 때에는 안전점검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본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2. 안전점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: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별표 8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해당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본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,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.
3. 일정계획 수립
4. 조사·시험 항목의 선정
5.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 인력과 소요 장비
6. 해당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관련 자료 등



별표3에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중 “1. 공통사항, 2. 계류/외곽시설, 3.교량”항목은 다음과 같이하하며, “4. 터널”항목은 삭제한다.

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(제9조제3항 관련)

시설물명	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
1. 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시설물기초 세굴</li> <li>-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(탄산화)에 따른 내력손실</li> <li>-<b>깎기·쌓기</b> 사면의 균열·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</li> </ul>
2. 계류/외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·부식</li> <li>-잔교·시설 파손 및 결함</li> <li>-케이슨 구조물의 파손</li> <li>-<b>기준선</b>변위 및 침하</li> </ul>
3. 교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교대·교각의 부등침하 및 균열 발생</li> <li>-교좌장치(교량받침)의 파손</li> <li>-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</li> <li>-<b>강교 접합부의 볼트손상, 이완, 탈락</b></li> <li>-주형의 균열 심화</li> <li>-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</li> <li>-철강재 용접부의 <b>용접불량</b></li> </ul>
4. 건축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기둥·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</li> <li>-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</li> <li>-주요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 심화</li> <li>-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</li> <li>-누수·부식 등에 의한 시설물의 기능 상실</li> </ul>

별표4에 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별지와 같이 한다.

안전점검 실시 시기(제11조제1항 관련)

구분	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기 안전점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최초 <b>정기안전점검</b>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(항만시설이 아닌 시설이 구조 및 형태의 변경으로 항만시설이 된 경우에는 구조 및 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하며,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.)로부터 1년 이내</li> <li>◦ 최초 <b>정기안전점검</b>일 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<b>정기안전점검</b> 실시. 다만, 태풍 또는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<b>정기안전점검</b> 시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, <b>정밀안전점검</b>, <b>긴급안전점검</b>,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</li> <li>◦ 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의2(해양시설의 안전점검) 등 타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침의 <b>정기안전점검</b>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.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정밀 안전점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(<b>특수</b>)방파제, 파제제, 안벽(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), 돌핀(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), 물양장(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에 한정한다) 및 그 밖의 계류시설 중 여객 이용시설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최초 <b>정밀안전점검</b>: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부터 6년 이내</li> <li>-정기 <b>정밀안전점검</b>: 최초 <b>정밀안전점검</b>일부터 6년마다 1회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◦ (<b>일반</b>)방사제, 방조제, 도류제, 호안, 도로, 교량, 철도, 궤도, 운하, 안벽(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), 물양장(널말뚝 또는 강관파일 등을 사용한 특수구조 형식의 것은 제외한다), 잔교, 부잔교, 선착장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초 <b>정밀안전점검</b>: 해당 항만시설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내</li> <li>- 정기 <b>정밀안전점검</b>: 최초 <b>정밀안전점검</b>일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긴급 안전점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<b>긴급안전점검</b>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양수산부 장관(관계 행정기관의 장 포함)이 시설물에 대한 <b>긴급안전점검</b>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</li> <li>- 시설물의 붕괴, 침하,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</li> <li>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<b>긴급안전점검</b>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
별표5에 긴급안전점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긴급안전점검의 구분(제15조 제1항 관련)

구 분	내 용
손상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, 보수·보강의 긴급성, 보수·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,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</li> <li>◦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,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li> </ul>
특별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, 사용제한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.</li> </ul>

별표6에 안전점검의 과업내용 중에서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안전점검의 과업내용(제16조 관련)

1.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

과업구분	내 용
1. 기본과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.</li> <li>○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.</li> </ul>
가. 자료수집 및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설계도서, 준공도면</li> <li>○ 시설물관리대장</li> <li>○ 기존 안전점검 실시결과</li> <li>○ 보수·보강이력</li> </ul>
나. 현장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요시설, 일반시설,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크리트 구조물 : 균열, 누수, 박리, 박락, 층분리, 백태, 철근노출 등</li> <li>- 강재 구조물 : 균열, 도장상태, 부식상태 등</li> </ul> </li> </ul>
다. 점검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관조사 결과 분석</li> <li>○ 시설물 전체 책임기술자의 소견 및 조치계획 등</li> </ul>
라. 보고서 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고서 작성</li> </ul>

2.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

과업구분	내 용
1. 기본과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.</li> <li>○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 필요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.</li> </ul>
가. 자료수집 및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준공도면, 구조계산서, 특별시방서 등</li> <li>○ 시공·보수·보강도면, 제작 및 작업도면</li> <li>○ 재료증명서, 품질시험기록, 재하시험 자료, 계측자료</li> <li>○ 시설물관리대장</li> <li>○ 기존 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</li> <li>○ 보수·보강이력</li> </ul>
나. 현장조사 및 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크리트 구조물: 균열, 누수, 박리, 박락, 층분리, 백태, 철근노출 등</li> <li>- 강재 구조물: 균열, 도장상태, 부식상태 등</li> </ul> </li> </ul>
과업구분	내 용
	- 석재 구조물: 유실, 교란, 세굴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콘크리트 비파괴강도(반발경도시험)</li> <li>-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</li> </ul> </li> </ul>
다. 상태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외관조사결과 분석</li> <li>◦ 현장 재료시험결과 분석</li> <li>◦ 대상 구조물(부재)에 대한 상태평가</li> <li>◦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(안전등급 지정)</li> </ul>
라. 보고서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</li> </ul>
2. 선택과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<b>정밀안전점검</b>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</li> </ul>
가. 자료수집 및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구조·지반·수리계산(계산서가 없는 경우)</li> <li>◦ 실측도면 작성(도면이 없는 경우)</li> </ul>
나. 현장조사 및 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</li> <li>◦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,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·해체 등</li> <li>◦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</li> <li>◦ 조사부위 표면청소</li> <li>◦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</li> <li>◦ <b>수중조사(간조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실시,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실시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중조사 실시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설 등으로 해지면 변동이 발생한 경우</li> <li>- 시설물에 인접하여 신규시설물이 설치되는 경우</li> <li>- 이전 수중조사 결과, 기초부의 세굴, 손상 등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◦ <b>측량(외곽시설 또는 계류시설인 경우 실시, 단 상치콘크리트가 없거나 부잔교인 경우 제외)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준측량</li> <li>- 기준선측량</li> </ul> </li> <li>◦ <b>그 밖에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·시험</b></li> </ul>
다. 안전성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필요한 부위의 구조·지반·수리·수문해석 등 안전성 평가</li> <li>◦ 보수·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·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</li> </ul>
라. 보수·보강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보수·보강 방법 제시</li> </ul>

별표11에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지와 같이 한다.

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
(제33조 관련)

구 분	내 용
1. 서 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출문</li> <li>· 보고서 목차</li> <li>· 시설물의 위치도</li> <li>· 시설물의 전경사진, 부위별 사진</li> <li>· 안전점검 결과표(안전등급)</li> <li>·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</li> <li>· 참여 기술자 명단</li> </ul>
2. 안전점검의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점검의 목적</li> <li>·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</li> <li>·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</li> <li>·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</li> <li>· 점검 수행 일정</li> </ul>
3. 자료수집 및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설계도면, 구조계산서</li> <li>·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</li> <li>· 보수·보강이력 및 용도변경</li> <li>·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, 내진보강 여부 확인</li> <li>· 그 밖에 관련자료</li> </ul>
4. 현장조사 및 시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 조사 결과분석</li> <li>· 주요한 결함(손상)의 발생원인 분석</li> <li>· 재료시험, 측정결과의 분석</li> </ul>
5. 시설물의 상태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</li> <li>·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</li> <li>· 상태등급 지정</li> </ul>
6.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(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 분석</li> <li>· 시설물의 구조적 및 기능적 안정성 평가</li> </ul>
7. 종합결론 및 건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</li> <li>· 안전등급 지정(안전성 평가가 수행된 경우)</li> <li>·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</li> <li>·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</li> <li>· 그 밖에 필요한 사항</li> </ul>
[부 록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업지시서</li> <li>· 외관조사망도</li> <li>· 측정, 시험 성과표</li> <li>· 상태평가 결과 자료</li> <li>· 시설물관리대장 사본</li> <li>·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</li> <li>·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</li> <li>· 사전조사 자료 일체</li> <li>· 그 밖에 참고자료</li> </ul>